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7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박덕흠 · 서천호 · 조지연
김선교 · 임태영 · 추경호
김예지 · 김재섭 · 강승규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명예회복에”를 “명예회복과 화해에”로 한다.

제1조 중 “회복시켜 줌으로써”를 “회복하고, 영동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을 위로함으로써”로, “국민화합에”를 “국민화합, 세계평화 번영에”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동전투 참전 군인”이란 1950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있었던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의 전투에 참전한 미국 군인을 말한다.

제3조 중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를 “영동전투 참전 군인 위령 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14조 중 “명예회복 등을”을 “명예회복,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 또는 그 유족 간의 화해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관련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기념사업과 치유, 화해 협력에 관한 사업

제1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자·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들 간의 화해를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u>명예</u> <u>회복</u>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 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u>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u> <u>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 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 <u>근리사건을 교훈으로</u>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u>명예</u> <u>회복과 화해</u>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 <u>회복하고, 영동전투에 참전한</u> <u>군인들의 희생을 위로함으로써</u> <u>--국민화합, 세계평화 번영에--</u> -----.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영동전투 참전 군인</u>”이란 1 <u>950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u> <u>까지 있었던 충청북도 영동군</u> <u>지역의 전투에 참전한 미국</u> <u>군인을 말한다.</u> 제3조(국가의 책무) ----- ----- -----<u>영</u> <u>동전투 참전 군인 위령 사업</u> <u>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함으로써</u>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u>명예회복</u>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u>위하여</u>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대한 지원) ----- ----- -----<u>명예회복,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 또는 그 유족 간의 화해</u> 등을-----. 1. <u>추념 행사의 거행</u> 2. <u>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u>과 <u>위령탑·사료관 건립</u> 3. <u>관련 유적의 보존·관리</u> 4. <u>관련 연구 및 교육</u> 5. <u>그 밖의 기념사업과 치유, 화해 협력에 관한 사업</u>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 ----- -----<u>위하여</u> 노력하고, <u>희생자·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들 간의 화해를 위하여</u>-----. ② · ③ (현행과 같음)
---	--